

표준도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및 주의사항

- 본 표준도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표준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본 표준도에서 제시한 제반조건과 현지여건을 고려하여,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구조검토를 수행하여야 합니다.